2015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5년 10월 29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47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5년 11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5년 11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시 체제개선 내용 및 주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이슈 분석」이라는 장을 신설하여 기존의 <참고>와는 별도로「기준금리 조정 이후 금융·경제상황 변화 점검」,「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 및 대응능력 평가」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금통위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간 정책 논의 내용을 요약 게재하여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국민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 다음으로 이번 보고서 내용의 주안점으로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6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하였음. 아울러 「중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메르스(MERS) 사태가 소비및 심리에 미친 영향」, 「6~9월 중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감소 및 시사점」 등의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수록하였음.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동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서이므로 인플레이션보고서와 일부 중복되더라도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상황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기준금리 조정 이후 금융·경제상황 변화 점검」에 대한 분석은 정책효과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균형있게 서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신용정책 운영 상황」 서술에 있어 가장 최근의 기대변화 등을 반영하는 한편, 보고서에 수록된 경제전망이 집행부의 견해임을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일부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고서 작성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음.

이와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일부 위원은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외 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책임있는 직원이 보고서를 총괄하여 일관성과 완성 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담당 부총재보는 현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비롯하여 금융안정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의 경우 발간 이후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 평가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등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총괄집필도 관련부서에서 전체 톤(tone)을 조율하는 등일관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앞으로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가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통화 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한편, 현재 논의중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주된 목적이 운용결과를 설명하고 해당기간에 있었던 정책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데 있는 만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런 취지에서 이번 호부터는 위원들의 토의내용이 부록으로 정리되었는데, 이 내용과 본문이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외부전문 가의 피드백 내용과 다음 보고서 발간시 동 피드백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보고 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5년 11월)(생략)